# 1920년대 조선에서 일제의 보통경찰제도수립과 강화에 대한 연구

박사 전 경송

##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19년의 3.1인민봉기에서 심대한 다격을 받은 일제는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간판을 바꾸어 달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일제는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앞으로 그 어 떤 민주주의적정치를 실시할듯이 떠들어대였으나 그것은 허울뿐이였습니다. 일제는 〈문화 통치〉의 간판밀에서 야만적인 폭압정치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김정일전집》 제6권 328폐지)

20세기초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중세기적인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민족의 모든 권리를 빼앗고 우리 인민에게 상가집개만도 못한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하였다.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하는데서 리용한 중요한 폭력수단이 다름 아닌 경찰이였다.

원래 경찰은 국가나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치안유지수단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리킨다. 그러나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경찰을 저들의 식민지지배정책실시를 보 장하기 위한 폭력수단으로 리용하였다.

일제는 식민지통치가 강화되는데 따라 경찰제도의 형태를 부단히 개편하였다. 일제는 1910년 《합병》과 함께 야만적인 헌병경찰제도를 조작하였으며 3.1인민봉기후에는 그것을 보통경찰제도로 개편하였다.

헌병경찰제도가 보통경찰제도로 개편되였지만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수단으로서의 일 제경찰의 사명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일제는 식민지통치전기간 우리 나라에서 경찰에 의한 파쑈적폭압통치를 실시하면서 무고한 조선인민을 마구 체포투옥하고 대량학살하는 죄행을 저질렀다.

현시기 일본은 과거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인도주의적이고 인간적이였다.》고 미화분 식하는가 하면 경찰제도를 조선인민의 《안녕질서를 지켜주기 위한 치안유지수단》이였다 고 계속 주장하며 저들의 침략죄행을 부정외곡하고있다.

그러므로 문화통치시기 일제의 보통경찰제도가 수립됨으로써 경찰폭압력량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였다는것을 밝히는것은 일제의 조선침략죄행을 낱낱이 폭로하고 우리 인민들을 투철한 반일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론문에서는 선행연구성과에 토대하면서 지난 시기 깊이 취급되지 못한 1920년대 경찰기구의 개편과정, 조선의 북부국경지방에 대한 경찰력량의 증강배치와 리유, 새로운 경찰폭압법의 조작을 중심으로 이 시기 보통경찰제도의 수립과 강화에 대하여 무단통치시기와 비교하여 연구분석하려고 한다.

## 2. 본 론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종래의 헌병경찰제도에 의거한 야만적인 무단통치로부터 교활한 문화통치에로 넘어갔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정책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그 어떤 우연적인 요인이나 계기에 의하여 일어난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일제가 야만적인 무단통치방식으로는 더이상 조선을 지배하고 통치할수 없었던 사회력사적요인과 관련되였다.

일제의 포악한 무단통치를 파탄시키고 식민지통치에 위기를 조성한 결정적요인은 조 선인민의 거족적인 3.1인민봉기였다.

일제에 의한 조선의 《병합》후 10년간은 우리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전변되고 중세기적공포정치의 총검밑에서 우리 민족이 언론,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모든 사회적권리와 물질적재부를 강탈당하고 모진 고통속에서 신음한 수난의 시대, 암흑의 시대, 기아의 시대였다.

10년간에 걸친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분노를 폭발시켰으며 그것은 드디여 3.1인민봉기로 터져올랐다.

3.1인민봉기는 비록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으로 실패하였으나 이 투쟁과정에 우리 인민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불굴의 투지와 기개를 시위하였으며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사태에 극도로 당황한일제는 지금까지의 무단통치에 대하여 재검토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3.1인민봉기를 통하여 총칼의 위협과 군사테로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된 일제는 형식상으로나마 종래의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는것으로써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수습하려고 하였다.

일제는 3.1인민봉기후 조선인민의 앙양된 반일기세를 말살하기 위하여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총독통치기구를 일부 개편보강하였다. 일제는 총독통치기구를 개편보강하면서 야만적인 무단통치를 상징하였던 헌병경찰기구를 보통경찰기구로 개편하고 새로운 식민 지폭압법들을 조작함으로써 보통경찰제도를 수립하였다. 일제는 보통경찰제도를 수립하고 각급 경찰기관과 인원, 물질적수단을 증강배치하여 경찰폭압력량을 대폭 강화하였다.

결국 일제가 3.1인민봉기후 문화통치를 표방하였지만 경찰폭압통치라는 점에서는 본 질상 달라진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 2. 1. 헌병경찰기구를 보통경찰기구로 개편

일제는 먼저 3.1인민봉기후 조선에서 헌병경찰기구를 폐지하고 보통경찰기구를 설치하였다.

3.1인민봉기에서 커다란 타격을 받은 일제는 헌병경찰기구를 폐지하고 보통경찰기구를 설치하여 조선에서 무단통치와는 다른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것처럼 하면서 조선인민을 기만하려는 교활한 목적을 추구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3.1인민봉기를 계기로 조선에서 헌병경찰기구를 보통경찰기구로 개편하기 시작하였다.

1919년 5월 9일 일본총리 하라 다까시는 3.1인민봉기의 경과에 대하여 보고하려고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야마가따 이사부로에게 종전의 무관총독제로부터 문관총독제에로의 개편을 비롯하여 《헌병제도를 고치고 경찰제도로 한다.》는 새로운 식민지통치정책을 내놓았다. 이것이 조선에서 일제가 경찰기구를 개편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하라의 지시에 따라 1919년 5월 14일 륙군대신 다나까 기이찌는 조선강점군사령관 우쯔노미야 다로에게 조선에서 헌병경찰제도개편에 대한 방안을 작성하게 하였다.

우쯔노미야는 5월 17일 《경찰은 점차 지방관헌에 소속시키며 이렇게 하여 지방관헌의 손발을 갖추어 더욱더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헌병경찰기구를 개편할데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참모총장 우에하라 유사꾸에게 제출하였다. 이것은 무단통치시기경찰기구와 행정기구가 분립되여있은것으로 하여 3.1인민봉기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할수 없었던 사정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 무단통치시기 헌병경찰기구개편을 완강히 반대하던 군부세력으로 부터 그 개편에 대한 찬동을 받아냈으며 드디여 6월 13일에는 최종적으로 내각회의에서 륙군대신 다나까가 조선에서 헌병경찰기구를 보통경찰기구로 개편한다는 새로운 통치방 안을 각료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날 다나까는 조선에서 헌병경찰기구는 폐지하지만 《변경(국경) 또는 불온한 지역에 한해서 헌병을 남겨둔다.》고 하였다. 다나까는 헌병은 《군사경찰상 중요한 지역 및 국경지방》에 배치되여 광범한 지역의 치안을 맡고있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립장은 보통경찰기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경지방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하겠다는 립장을 밝혔다.

6월 20일 다나까는 정무총감 야마가따에게 헌병경찰기구개편에 따르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 총독부 관리들을 도꾜로 보낼데 대하여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총독부 내무부장 우사미 가쯔오와 경무총감부 경무과장 구니또모 나오젠이 도꾜에 파견되였다. 구니또모는 도꾜로 건너가기 전에 헌병측에는 극비로 붙이고 조선총독부 참사관 오쯔까 쯔네사부로와 토의한데 기초하여 경찰인원수, 경찰비용 등 보통경찰기구설치와 관련한의견서를 작성하였다.

6월 25일 도교로 건너간 우사미와 구니또모는 이미 작성된 의견서를 다나까에게 제출하고 헌병경찰기구개편과 관련한 교섭을 시작하였다.

6월 28일 내각회의에서 조선에서의 헌병경찰기구폐지와 보통경찰기구설치에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토의과정에 법제국 장관 요꼬다가 조선에서 경찰기구를 총독부 내무부의 한개 과인 경무과로 설치할데 대한 안을 들고나왔다. 그러나 우사미와 구니또모는 《조선은 내지(일본)와 다르며 경찰제도의 통일은 중대한 문제이고 한개 과로는 치안유지를할수 없다. 그러므로 경찰국으로 그 권한의 범위를 넓히고 13도의 경찰권을 통일하여 치안유지를 이루어야 한다.》고 완강히 주장하여 총독부의 한개 부서로서 경무국이 설치되게되었다.

조선에서 헌병경찰기구의 폐지와 보통경찰기구설치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여 추밀원에 제출되였다.

1919년 8월 8일 추밀원에서 일련의 수정을 진행하고 조선에서 헌병경찰기구의 폐지와 보통경찰기구설치에 대한 문제가 통과되였다. 8월 19일에는 헌병경찰기구를 폐지하고 보통경찰기구를 설치할데 대한 법령들이 발포되였다.

《조선총독부 경찰관서관제폐지의 건》(칙령 제387호)에 의해 조선강점 헌병사령관, 각도 헌병대장이 각각 경무총장, 각도경무부장을 겸임하는 체계가 폐지되였다. 이에 따라 헌병이 보통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법적담보로 되여있던 《조선주차헌병조례》(칙령 제343호, 1910년 9월)도 폐지되였다.

그리하여 하나로 합쳐져있던 경무총감부와 헌병대사령부가 서로 분리되고 조선총독 부의 중앙경찰기구로서 경무국이 새로 설치되였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 일제의 헌병경찰기구가 폐지되고 보통경찰기구가 설치되였다.

일제는 다음으로 조선에서 경무국으로부터 경찰관주재소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경찰 기구체계를 수립하였다.

일제는 중앙경찰기구인 경무국의 주요부서들을 배치하고 경찰기능을 제정하였다.

1920년대 경무국의 주요부서는 경무과, 고등경찰과, 보안과, 도서과, 위생과로 이루어져있었다. 도서과는 1926년 4월에 새로 설치되었으며 고등경찰과는 1926년 4월 보안과에 합쳐졌다.

주요부서들의 임무를 본다면 경무과는 행정경찰, 경찰구획 및 경찰직원의 배치, 경위 및 경비, 경찰의 물질적수단보장 등과 관련한 사항들, 보안과에서는 고등경찰, 외사경찰 등에 관한 사항들, 도서과에서는 신문, 잡지 및 출판물, 영화, 축음기판 등의 검열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하였다.

경찰기능상에서 보면 경무과, 보안과, 도서과가 조선인민에 대한 기본적인 폭압부서들이였다.

일제는 각 도와 부, 군, 면에 이르기까지 행정단위별로 각급 경찰기구들을 배치하였다.

각 도에는 무단통치시기 통합되여있던 도헌병대와 도경무부가 분리되여 경찰사무집 행기관으로 도지사의 관할밑에 제3부가 설치되였다. 1921년 2월부터 제3부는 경찰부로 고쳐불렀다.

1920년대 도경찰부의 주요부서는 경무과, 고등경찰과, 보안과, 위생과로 이루어져있었다. 도경찰부에는 총독부 경무국과 달리 고등경찰과가 마지막까지 존재하였다. 1922년 12월에 경기도경찰부에만 형사과가 새로 설치되었다.

도경찰부밑에 경찰서, 경찰관주재소, 경찰관파출소, 경찰관출장소가 있었다. 부, 군에 경찰서가, 면에 경찰관주재소가 설치되였다. 경찰관파출소는 평양이나 경성을 비롯하여 인구가 밀집된 도시들에, 경찰관출장소는 주로 국경지역과 같이 주민들이 얼마 없어도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한 곳들에 설치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의 반일운동이 앙양되는데 따라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의 폭압 기능을 계속 강화하였다.

일제는 1928년 7월부터 경찰폭압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경무국과 각도경찰부의 고등경찰부서에 사상범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찰인원을 새로 배치하였다. 여기서 사상범죄란 명백히 일제가 당시 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실시에 커다란 위험으로 되고있던 공산주의사상과 그의 영향밑에 벌어지고있던 각종 대중운동을 가리키

는것이였다.

일제는 문화통치시기 경찰의 제일 말단직무인 순사의 폭압기능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순사는 내근, 외근, 형사, 특무, 교습순사로 구분되였다.

내근순사는 주로 경찰기관내부에서 경찰사무를 맡아보았으며 외근순사는 경비, 경위, 순찰, 류치장간수, 호구조사, 영업감시 등 각종 경찰사무에 종사하는 순사의 기본력량이였다. 형사는 범죄의 수사, 사찰 등을, 특무는 특정한 임무를 맡아수행하도록 되여있었다. 교습순사는 경찰관강습소 또는 도순사교습소에서 순사교육을 받는 순사로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도 일단 중요한 사건이 제기되면 그에 대한 탄압에 동원되였다.

일제는 경찰들에게 조선인민을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기능을 부여해놓고있었다.

총독부 경무국은 1922년 7월 13일 《호구조사규정》이라는것을 조작발표하고 경찰서 장들이 경찰들을 통하여 3개월에 1차이상 호구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호구조사방법까지 정해놓았다. 1922년 8월 8일에 제정된 충청북도의 《호구조사규정시행세칙》에 의하면 해당 지역의 경찰들이 호구조사를 할 때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재산 및 소득, 업무상황, 성품, 사상, 당파 및 경력, 가정 및 사교상황 등(제1조) 6개 항목으로 되여있었으며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대상은 《요시찰인, 류학생, 신문잡지 기자 및 통신원, 정치 및 시사를 론평하거나 또는 과격하고 조폭한 언동을 하며 기타 고등경찰상 주의해야 할자》 (제2조)였다.

이것은 일제가 경찰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생활 구석구석을 면밀히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경우 즉시 그에 대한 탄압조치를 취하려고 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에서 헌병경찰기구가 폐지되고 보통경찰기구가 새로 설치되는 과정은 폭압기능의 약화과정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는 과정이였다.

그것은 무단통치시기 실시되여온 경찰기구와 일반행정기구와의 분립제도가 일반행정 기구안의 병립제도로 변경된 결과 종래 식민지일반행정체계와 경찰행정체계사이에 존재하였던 상대적간격이 없어지고 총독 및 도지사들의 경찰기구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였기때문이다.

무단통치시기에는 조선에서 중앙경찰기구로서 경무총감부가 존재하였는데 이것은 총 독부의 한개 부서로써가 아니라 독립적인 기구로 되여있었다. 각 도경무부도 역시 도지사 의 관할밖에 있었다.

일제는 문화통치로 넘어가면서 헌병의 일반경찰기능을 폐지시켰지만 그것은 기만적이였다.

사실상 헌병은 폐지된것이 아니라 폭압력량으로 계속 존재하였다. 일반경찰기능을 보통경찰에 넘겼으므로 전체로서의 폭압력량은 더욱 강화되였다.

그것은 1919년 9월 각 도 3부장회의에서 정무총감 미즈노 렌따로가 헌병경찰이 폐지되여도 헌병과 경찰은 긴밀히 련계하며 협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헌병경찰이 폐지된 다음이라고 하여 헌병이 완전히 없어진것은 아니다. 알고있는것처럼 행정경찰, 사법경찰에 대하여서는 헌병은 조선총독의 명령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며 또한 특히 국경방면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상 헌병이 주둔하여있기때문에 헌병과 보통경찰이 서로 협력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태에서는 헌병과 보통경찰이 서로 융화하고 서로 협력해나가

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협력이 평소에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비상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일마지막에는 군대의 힘에 의거해야 한다. …여기에서 군대와의 련락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총독은 군사령관에게 요구하여 출병하며 도지사는 해당 지역에 있는 부대장과 협의하여 군대의 출동을 요구한다.》고 강조한데서 명백히 나타나고있다. 미즈노의 이러한 발언은 1920년대에도 조선인민에 대한 탄압에서 일제가 경찰과 함께 헌병과 군대를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헌병경찰기구폐지가 기만적이라는것은 일제가 경찰과 헌병이 조선인민에 대한 탄압에서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한데서도 나타나고있다.

1925년 1월 12일 조선총독부《훈령》제2호로《조선에서 헌병의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에 관한 복무규정》을 조작하였다.

여기에서는 《헌병은 항상 관내의 치안상황을 자세히 살펴야 하며》(제2조), 《헌병은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항상 경찰관리와 밀접한 련락을 유지하며 특히 폭도진압, 수색 및 체포와 관련하여서는 경찰관리와 협력》한다는것을 규제함으로써 보통경찰제도에로의 개편이 결코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에서 헌병을 배제한다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명백히 밝히였다.

이 조치에 대하여 총독부 경무국 경무과장 구니또모 나오겐은 《이 조치는 종래에 있 던것인데 다만 법규상으로만 정해져있지 않았다는것, 실제상으로는 경찰과 헌병의 호상협 의로 진행하여오던것을 이번에 법적으로 발표한것에 불과하다는것, 목적은 경찰관의 능력 으로 부족한 측면을 보충하려는데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헌병경찰기구의 보통경찰기구에로의 개편은 기구체계 등 형태상에서의 기만 적변화에 지나지 않는것으로서 식민지통치의 근본방침은 본질상 달라진것은 없었다.

실지로 문화통치시기 첫 정무총감이였던 미즈노 렌따로가 《불손한 행동을 하며 우리 국권에 반항하는자가 있다면 단연 용서할수 없다.

소위 추상렬일(가을의 찬서리와 여름의 뜨거운 해별이라는 뜻으로 형벌이 엄정하고 위세가 엄엄한것을 비겨이르는 말)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것이나 경무 국장 아까이께 아쯔시가 《초미의 시무(급한 일이나 중요한 일)는 다만 하나인데 백가지 난관을 물리치고 경찰을 수립하며 무모한 행동을 진압하고 질서를 회복하는것이다.》고 떠 벌인것이 대표적실례였다.

이처럼 일제는 3.1인민봉기후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헌병경찰기구를 폐지하고 보통 경찰기구를 설치하였다.

## 2. 2. 새로운 식민지폭압법 조작

일제는 문화통치시기 보통경찰기구를 설치하면서 경찰이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에 써 먹을수 있는 새로운 식민지폭압법들을 조작하였다.

일제는 통감통치와 무단통치시기 조작된 폭압법들인 《보안법》, 《출판법》, 《신문지법》, 《경찰범처벌규칙》 등을 문화통치시기에도 계속 적용하는 전제하에서 새로운 식민지폭압 법들을 조작하였다.

일제는 먼저 반일독립운동을 비롯한 조선인민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탄압할것을 규

제한 식민지폭압법들을 조작하였다.

이러한 식민지폭압법으로 먼저 조작된것이 1919년 4월 15일《제령》제7호로 공포된《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이였다.

이 법은 1919년 우리 나라에서 전인민적인 반일항쟁인 3.1인민봉기의 폭발을 계기로 그를 탄압하기 위하여 조작되였으며 그후 식민지통치전기간 조선인민의 모든 정치활동을 탄압금지하는 폭압법으로 적용되였는데 그 대상과 범위, 형량에서 종래의 《보안법》을 훨씬 릉가하는 식민지악법이였다.

《보안법》(1907년 7월 27일 조작)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정치와 관련하여 불온한 언론, 동작 또는 다른 사람을 선동, 교사 혹은 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에 관계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자》(제7조)라고 규정하였으나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에서는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다수가 공동으로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하려고 하는자》,이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선동을 하는자》(제1조)로 그 적용대상을 보다 명백하게그리고 포괄적으로 규제하였다. 여기에서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안녕질서를 방해하는 자》란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으려는 조선의 반일독립운동자들을 가리키는것이였다. 실제로 일제는 《정치의 변혁》은 《…제국의 령토의 일부를 제국주권의 통치로부터 리탈시킬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제함으로써 명백히 조선의 독립운동자들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에서 《이 법은 제국밖에서 제1조의 죄를 범한 제국신민에게도 적용한다.》(제3조)고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보다 확대하였다.

일제가 종래의 《보안법》에 없던 이러한 새로운 폭압규정을 설정한것은 조선인민의 반일독립운동이 조선국내뿐아니라 만주와 상해를 비롯한 국외에서도 활발히 벌어진것과 관련하여 우리 인민의 모든 반일독립운동을 탄압할것을 규제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 조항에 따라 일제는 1920년대이후 국외에서 활발히 벌어진 반일독립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또한 《보안법》에서는 《50개이상의 태형, 10개월이하의 금옥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그 형량을 규제한데 비해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에서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제1조)고 대폭 확대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의 모든 정치활동을 탄압금지하기 위한 폭압법으로 《치안유지법》을 조작하였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 4월 22일 법률 제46호로 공포되였다. 이 법은 초기에 적용범위가 일본국내로만 한정되여있었는데 5월 8일 칙령 제175호(《치안유지법을 조선, 대만 및 싸할린에 시행하는 건》)가 공포됨으로써 조선에도 적용되게 되였다. 칙령에서는 조선에서 《치안유지법》을 192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는것을 규제하였다.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조선에 적용하게 된것은 1920년대이후 조선인민의 반일독립 운동이 이전시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보다 강화된것과 관련된다.

1910년대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반일독립운동이 주로 부르죠아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 진행되였으나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사조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사상이 보급되고 그 영향밑에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농민운동 등 각이한 형태의 대중운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이 시기 공산주의운동은 이전시기 부르죠아민족주의에 기초하여 벌어진 운동들과는 달리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체제를 뒤엎고 민족적 및 계급적해방을 가져오기 위 한 치렬한 계급투쟁으로서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공포를 주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조선에서 공산주의운동이 파급되고 장성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폭압수단으로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였다.

일제가 조작한 《치안유지법》은 적용대상과 범위, 형량에서 이전시기의것을 훨씬 릉가하는 식민지폭압법이였다.

《치안유지법》은 적용대상을 《보안법》이나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에 비해 보다 폭넓게 규정하였다.

《치안유지법》은 제1조부터 5조까지 적용대상과 형량을 규제하였다.

제1조에서는 우선 제1항에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자 또는 결사의 역원, 그의 지도자로서의 임무에 종사하는자》와 《사정을 알면서 결사에 가입하는자 또는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돕는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규제하였다.

여기서 국체란 《천황》제에 기초한 일본의 국가통치체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체의 변혁》이란 곧 일본의 국가통치체제의 《변혁》이며 이것이 조선에서는 일제의 식민지통 치체제의 전복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치안유지법》의 중요한 적용대상이 바로 민족주의자이건 공산주의자이건 관계없이 독립운동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이였다.

그것은 《치안유지법》조작을 위한 국회에서의 론의과정에 식민지독립운동이 《국체의 변혁》에 해당되는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정부당국자들이 《천황이 총괄하는 통치 권은 완전무결한 통치권》이여야 하며 《그 일부를 …부정하면 완전무결한 통치권이 아니 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식민지독립운동은 물론 이 법에 저촉된다.》고 대답함으로써 조 선인민의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이 명백히 《치안유지법》의 적용대상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제1조에서는 또한 제2항에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자, 결사에 가입하는자 또는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돕는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제하였다. 여기서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이란 자본주의제도의 철폐와 계급해방을 념두에 둔것으로서 1920년대이후 조선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던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농민운동 등을 탄압하기 위한 조항이였다.

《치안유지법》제2조에서는《제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목적실행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는자》, 제3조에서는《우와 같은 목적의 사항의 실행을 선동하는자》, 제4조에서는《제1조의 목적으로 소요, 폭행 기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줄수 있는 범죄를 선동하는 자》, 제5조에서는《제1조, 제3조의 죄를 범하도록 할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리익을 제공하거나 또는 약속하는자》,《내용은 알고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하는자》를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우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협의, 선동, 금품제공 및 약속 등 그 적용대상이 매우 폭넓 게 규정되였다.

《치안유지법》은 제7조에서 《이 법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법의 시행구역밖에서 죄를 범한자에게도 적용한다.》고 그 적용범위를 폭넓게 규제하였다. 이 조항 역시 《정치에 관 한 범죄처벌의 건》과 같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벌어지는 조선인민의 모든 반일독립운 동을 탄압하기 위한것이였다.

《치안유지법》은 특히 형량을 매우 가혹하게 규정하였다.

일제는 《치안유지법》의 제1조에서 제1항의 죄(《국체변혁》)와 제2항의 죄(《사유재산제도부인》)에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며 제2조에서 제1조 제1항의 목적실행과 관련하여 협의하는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며 제3조에서 제1조 제1항의 목적실행을 선동하는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의 각이한 형벌을 가할수 있게 규정하였다.

《치안유지법》에서는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에 비하여 형량은 비슷하지만 그형태가 매우 구체화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수단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반일독립운동을 비롯한 모든 정치활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면서 1928년에 이 법을 일부 개악하였다.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개악하게 된것은 192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에서 여러차례에 걸치는 조선공산당사건이 일어나고 6.10만세시위투쟁과 같은 반일독립운동이보다 활발히 전개된것으로 하여 그를 탄압하는데 보다 세부적이고 효과적인 새로운 악법이 필요하였기때문이다. 이 법을 《신치안유지법》이라고 부른다. 《신치안유지법》은 1925년의 《치안유지법》과 적용대상과 범위는 같은데 형벌량을 사형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일제가 조작한 《치안유지법》은 그후 식민지통치전기간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에서 악명을 떨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출판물들까지도 《치안유지법》이 이미전에 조작된 《보안법》,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과 함께 《조선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하여 맹위를 떨쳤다.》고 밝히고있는데서 잘 알수 있다.

일제는 다음으로 조선인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말살하기 위한 폭압법들을 조작하였다. 일제는 1920년대초 《민의창달》의 기만적구호밑에 조선인민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누리는 시대라도 온것처럼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일부 조선말로 된 신문, 잡지들의 발간을 허용하였다. 이로부터 일제는 새롭게 출현하게 될 각종 출판물들이 조선인민의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것을 가로막을 새로운 악법들이 필요하였던것이다.

일제는 이미전에 조작되여 조선에서 시행되고있던 언론출판탄압법들인 《신문지법》, 《출판법》을 계속 적용하면서 새로운 악법들을 련이어 조작하였다.

일제는 우선 조선에서 출판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악법인 《검열표준》이라는것을 조작하였다.

《검열표준》은 일반검열표준과 특수검열표준으로 구성되여있는데 여기에서 기본은 일반검열표준에 있는 《안녕질서》방해의 사항이였다.

일제는 이 《안녕질서》방해의 사항이라는데서 각종 출판금지시항을 28가지로 구분해놓았다.

그 중요내용은 첫째로, 조선인민의 반일독립운동과 혁명운동에 대한 그 어떤 찬양이나 선전도 완전히 금지한것이다. 그것은 조선의 독립을 선동하거나 또는 그 운동을 찬양하는 사항, 조선민족의식을 앙양시키는 사항, 혁명운동을 선동하거나 또는 찬양하는 사항, 대중운동 또는 각종 쟁의, 동맹파업, 동맹휴업 등을 선동 혹은 원조하거나 찬양하는 사항들을 금지대상으로 규제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그 중요내용은 둘째로, 저들의 《천황》제국가의 《존엄》에 《손상》을 줄수 있는 모든 사항을 완전히 금지한것이다. 그것은 《황실》의 존엄을 모독할 우려가 있는 사항, 신궁, 신사등을 모독할 우려가 있는 기사들을 금지대상으로 규제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일제는 보다 구체화된 언론출판탄압법으로서 《조선문간행물행정처분례》라는것도 조 작하였는데 이 법의 적용대상은 조선인민과 조선말로 된 각종 출판물이였다.

일제는 우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기사들은 절대로 출판물에 실을수 없으며 혹은 출판물에 실은것이 발각되는 경우 각종 제재조치를 취할것을 규제하였다.

이렇게 새로 조작되거나 개악된 악법들은 일제경찰에게 있어서 무제한한 폭력을 휘두를수 있는 수단으로 되였다.

이처럼 1920년대 일제의 보통경찰기구가 설치되고 새로운 폭압법이 조작되여 결합됨 으로써 보통경찰제도가 수립되였다.

## 2. 3. 보통경찰제도 강화

1920년대 일제는 조선에서 경찰폭압력량을 끊임없이 증강하여 보통경찰제도를 강화하였다.

일제는 우선 각급 경찰기관을 확대하였다.

일제가 무단통치말기인 1918년에 조선에 배치한 경찰기관수를 보면 각 도경무부 13개, 경찰서 99개, 순사주재소 532개, 순사파출소 106개로서 모두 750개였다. 그런데 개편이후인 1919년말에 이르러 경찰기관수는 각 도경찰부 13개, 경찰서 251개, 순사주재소 2 354개, 순사파출소 143개로서 모두 2 761개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경찰기관수가 최대로 늘어난 1923년에는 경찰기관총수가 3 049개에 달하였다.

이것은 경찰기관수가 1920년대에 들어와 1918년에 비해 4배이상으로 늘어났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제는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체로 1개 부, 군에 1개 경찰서, 1개 면에 1개 경찰 관주재소를 설치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것은 문화통치시기 총독으로 기여든 사이또가 조선에서 경찰기관의 강화를 위하여 《…일을 사전에 막고 화근을 없애는것은 조선통치의 요점으로서 오늘 특히 경비를 충실히 해야 할 긴장한 감을 느끼는바이다. …이러한 때 극력 경찰력의 충실을 기도하고 종래의 1만 5 000명에 대하여 림시로 순사 약 5 000명을 증원할 계획을 세웠으며 그 계획의기본은 각 면에 1개 주재소를 설치하는데 있다.》고 경찰기관확대계획을 밝힌데서 알수있다.

일제는 1920년대이후 이러한 계획에 따라 조선에서 각급 경찰기관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대초 조선전체의 부, 군수 232개에 비해 경찰서 250개, 면수 2 504개에 비해 경찰관주재소, 경찰관출장소, 경찰관화출소는 2 599개였다.

그 이후 경찰기관수는 일련의 변동을 가져왔는데 줄어들지는 않고 장성되였다. 1926년 12월 조선에서 일제의 각급 경찰기관은 2862개에 달하였다.

일제는 경찰기관이 확대되는데 따라 경찰인원을 대대적으로 증강배치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의 경찰제도개편안이 추밀원에서 통과되자마자 경찰인원증강에 달라

붙었다.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으로 내정된 미즈노 렌따로는 1919년 8월 8일(추밀원에서 경찰제도개편안이 통과된 날) 우사미, 구니또모 등과 협의하고 정부에 3 000명정도의 순사를 보충해줄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는 1919년말과 1920년초에 경찰인원을 2차로 나누어 증강배치하였다.

경찰인원의 증강배치는 1919년에 기본적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인원가운데서 순사만 보더라도 이전 헌병으로부터 1 338명, 이전 헌병보조원으로부터 4 181명의 이동과 일본 에서 전임 1 454명, 모집 3 141명이 종전의 순사(일본인 2 617명, 조선인 3 330명)와 합 쳐져 1만 6 000명이상으로 증강되였다.

여기에서 이동이란 조선에서 무단통치시기 헌병과 헌병보조원으로 근무하던자들이 문화통치시기에 순사로 되였다는것이며 전임이란 일본에서 경찰로 근무하다가 조선의 순 사로 배치되였다는것, 모집이란 일본에서 새로 선발되여 조선에 순사로 배치되였다는것을 의미하였다.

1920년 1월에 있은 제2차확장에서는 순사만 3 055명이나 증강배치되였다.

경찰의 하급력량인 순사와 함께 그를 지휘장악하는 경찰관력량도 증강되였다. 무단통 치말기인 1918년에 일제가 조선에서 배치한 경찰관총수는 5 402명이였는데 1919년말에는 1만 5 392명으로서 2.8배이상 증강되였다.

일제는 문화통치시기 경찰인원을 증강하는데서 특히 조선인순사를 대폭 늘이였다. 경찰인원이 최대로 증강되였던 1922년에 일제경찰의 제일 높은 등급인 경시는 일본인 41명, 조선인 14명으로서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4%, 경부는 일본인 377명, 조선인 140명으로서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7%, 경부보는 일본인 730명, 조선인 268명으로서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 순사는 일본인 1만 1 028명, 조선인 8 160명으로서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2.5%였다.

이것은 문화통치시기 일제의 각이한 경찰등급가운데서 경시, 경부, 경부보는 조선사람이 25~27%정도 차지한데 비하여 순사로는 특별히 조선사람이 많이 배치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제가 조선인순사를 많이 배치한것은 순사가 경찰의 제일 말단직무로서 조선인민과 직접 대치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인경찰을 조선인민에 대한 탄압에 편리한 도구로 리 용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것이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일제경찰관리들이 《경찰로서 가장 곤난한것은 조선사람들의 풍속과습관, 언어가 다르며 민족적심리상태가 같지 않기때문에 그들(조선인)이 무엇을 생각하며어떠한 심리를 가지고있는가를 쉽게 알아내기 어려운것이다. 범죄의 수사나 기타 조선사람들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리 민첩한자라 할지라도 내지인(일본인)경찰관으로서는알아맞추기 어려울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인순사가 활용되는것이다.》고 솔직히 고백한데서 잘 알수 있다.

문화통치시기 경찰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일제의 책동에서 찾아볼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첫째로, 우리 나라 북부국경지역을 매우 중시하였다는것이다.

일제는 북부국경지역인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찰기 관을 매우 조밀하게 배치하였다. 평안북도는 20개의 부, 군의 수에 비해 경찰서가 24개로서 1개 군에 평균 1.2개의경찰서, 193개의 면수에 비해 경찰관주재소, 경찰관출장소, 경찰관화출소가 268개로서 1개 면에 평균 1.4개, 함경남도는 17개의 부, 군의 수에 비해 경찰서가 20개로서 1개 군에 평균 1.2개, 141개의 면수에 비해 경찰관주재소, 경찰관출장소, 경찰관화출소가 200개로서 1개 면에 평균 1.4개, 함경북도는 12개의 부, 군의 수에 비해 경찰서가 19개로서 1개 군에 평균 1.6개, 81개의 면수에 비해 경찰관주재소, 경찰관출장소, 경찰관화출소가 167개로서 1개 면에 평균 2.1개의 비률로 조밀하게 배치되었다.

특히 일제는 이 국경지역 도들에서도 압록강과 두만강연안에 경찰기관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는데 평안북도에 172개, 함경남도에 48개, 함경북도에 75개 계 295개였다.

우의 자료에서 알수 있는것처럼 일제는 평안북도에 도내 전체 경찰기관수의 58.9%, 함경남도에 21.8%, 함경북도에 40.3%를 압록강과 두만강연안에 배치하였으며 이것은 일제가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전히 국경지역을 대단히 중시하였고 여기에 경찰기관을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조밀하게 배치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제는 경찰기관배치에서뿐아니라 경찰인원배치에서도 국경지역을 중시하였다. 실례로 1920년 10월 우리 나라 남부지역에서 순사 580명을 국경 3개 도로 이동시켜 배치함으로써 압록강과 두만강연안의 국경에 설치되는 경찰관주재소와 경찰관출장소들마다 4~10명의 경찰을 배치하였으며 1922년 7월 또다시 300여명의 순사를 증강하여 국경지역의도들에 배치하였다.

다음의 자료들은 일제가 국경지역에 얼마나 많은 경찰력량을 배치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일제는 1920년대에 평안북도에 2 479명, 함경남도에 1 549명, 함경북도에 1 448명계 5 476명의 경찰인원을 배치하였다.

일제는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에서도 압록강과 두만강연안에 경찰인원을 매우조밀하게 배치하였다. 그 정형을 보면 평안북도에 1 235명, 함경남도에 423명, 함경북도에 635명 계 2 293명이였다.

이 자료를 분석해보면 평안북도에서는 도내 전체 경찰인원의 49.8%, 함경남도에서는 27.3%, 함경북도에서는 43.9%가 압록강과 두만강연안에 배치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일제가 압록강과 두만강연안에 경찰무력을 더 많이 배치한것은 이 지역에서 조선인 민의 각종 형태의 독립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던 사정과 관련되였다. 일제는 이 지역에 경찰무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조선인민의 독립운동을 사전에 분쇄하고 해외독립운동 의 영향이 국내에로 미치는것을 말살해버림으로써 조선인민으로 하여금 민족적독립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고 그들을 저들에게 순종하는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였다.

문화통치시기 경찰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일제의 책동에서 찾아볼수 있는 중요한 특 징은 둘째로, 일본에서 악질적인 경찰관리들을 선발하여 조선에 끌어들인것이다.

무단통치시기에는 경무총장이나 각 도경무부장 등을 모두 헌병이 겸임하였기때문에 그러한 직무를 차지할 경찰관리들이 필요없었다. 그러나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개편하면서 새로 독립적으로 총독부 경무국과 각 도경찰부를 내왔기때문에 그에 필요한 경찰관리들을 보충하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일제는 일본에서 현직경찰관리나 행정치안관리로 있던 악질적인 분자들을 조선에 끌어들이는것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 일제가 이 시기 조선에 새로 끌어들인 주요경찰 관리들은 다음과 같다.

문화통지시기 일세가 새로 쓸어들인 경찰관리				
№	이 름	직 무	전 직	비교
1	노구찌 즁기찌	경무국장	경시청 경무부장	
2	시라가미 유기찌	경무국 경무과장	도야마현 경찰부장	
3	우라베 마사이찌	경무국 보안과장	야마가다현 리사관	
4	고바야시 미쯔마사	경무국 고등경찰과장	경시청 경무과장	
5	마루야마 쯔루기찌	경무국 사무관	시즈오까현 내무부장	
6	후지하라 기조	경무국 사무관	아오모리현 리사관	
7	다나까 다께오	경무국 사무관	나가노현 경시	
8	후루바시 데이지로	경찰관강습소 소장	아이찌현 리사관	
9	지바 사도루	경기도 3부장	아끼다현 경찰부장	
10	야마구찌 야스겐	충청북도 3부장	효고현 리사관	
11	간이즈 다께시	충청남도 3부장	이바라기현 리사관	
12	마쯔무라 마쯔모리	전라북도 3부장	후꾸오까현 리사관	
13	야마시다 료이찌	전라남도 3부장	경시청 리사관	
14	신죠 유지로	경상북도 3부장	시즈오까현 리사관	
15	야기 린사꾸	경상남도 3부장	효고현 리사관	
16	마노 세이이찌	황해도 3부장	도야마현 리사관	
17	이시구로 히데히꼬	강원도 3부장	군마현 시학관	
18	아까이께 아쯔시	총독부 내무국장	시즈오까현 지사	

문화통치시기 일제가 새로 끌어들인 경찰관리

우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일제는 국경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의 경찰부장을 자국에서 끌어들인 경찰관리들로 임명하였다. 특히 경기도경찰부장은 아끼다현의 현직 경찰부장을 그대로 임명하였다. 이때 일제가 끌어들인 경찰관리들가운데는 후에 경무국장으로 된 마루야마 쯔루기찌와 다나까 다께오를 비롯하여 조선에서 식민지경찰폭압기구의 중추적인물로 된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일제는 자국에서 새로 끌어들이는 경찰관리들만으로는 대폭 확대된 경찰관인원을 보장할수 없었기때문에 보통경찰제도를 설치하면서 악질적인 경찰관리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것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 주요경찰관직들을 차지하고 조선인민에 대한폭압에 날뛰던자들도 그대로 경찰기관들에 배치하였다. 무단통치시기 경무총감부 경무과장이였으며 보통경찰제도설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논 구니또모 나오겐을 문화통치시기에도 경무국 경무과장으로 그대로 임명한것은 그러한 조치의 하나였다. 이것은 일제가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개편하면서 떠들던 《변화》의 기만적본질을 말해주는 하나의단편적인 실례라고 할수 있다.

문화통치시기 경찰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일제의 책동에서 찾아볼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셋째로, 경찰실무와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여 경찰력량의 폭압기질을 높이려고 한것

이다.

일제는 이미 1908년에 경찰관련습소라는것을 설치하였으며 무단통치시기에는 이것을 경무총감부의 한개 부서로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3개월간을 1기로 하여 일본인순사 50명 정도씩 대상으로 조선어를 위주로 여러 과목의 강습을 주면서 경찰폭압력량을 강화하여 왔다.

문화통치로 넘어가면서 일제는 1919년 8월 경찰관련습소를 경찰관강습소로 개편하였으며 각 도마다 순사교습소를 새로 설치하였다. 경찰관강습소에는 소장과 교수 4명, 조교수 5명, 서기 2명 기타 강사와 촉탁을 두고 경찰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경찰관강습소는 문화통치시기 보통경찰제도의 설치와 관련하여 경찰인원을 대대적으로 증가시킬 목적으로 조작되였다.

일제는 경찰관강습소에 수많은 경찰들을 끌어들여 조선인민을 감시, 탄압하는데 필요한 수법과 기술을 체득시키였다. 경찰관강습소에는 강습과와 2개의 교습과를 두었으며 강습과는 다시 본과 및 별과로 구분하였다. 강습과는 1년을 1기로 하고 매 기에 100명정도씩 받아 교육을 진행하였다. 본과는 해당 도지사의 추천에 의해 경찰의 골간으로 될 30명정도의 인원을 선발하여 훈육(도덕규범), 형법, 행정법, 조선형사령, 범죄수사, 식민지정책, 법의학 및 범죄심리학, 조선어 및 일어, 경찰실무, 무도 등 17개 과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별과는 형사, 회계, 군사, 어학, 각종 무기 등 특수실무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습과는 경찰기관에 처음으로 들어온 일본인순사들에 대한 교육을 위한것으로서 4개월정도를 1기로 하여 400~500명정도를 받아들여 훈육, 법학대의, 경찰법, 형법, 소방, 조선어, 경찰실무, 조련, 무도 등 13개 과목을 교육하였다.

일제는 일본인경찰들이 조선인민을 탄압하는데서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것이 커다란 장애로 된다고 보고 경찰관강습소에서 조선어교육에 큰 힘을 넣었다. 그것은 1921년에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직원 조선어장려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 규정에 의한 조선어장려 시험합격자의 대부분이 일본인경찰관이 차지하였다는데서 잘 나타나고있다.

경찰관강습소에서 교육기간에 조선어를 포함한 12개 과목에 대한 강습을 주었는데 모두 497시간중 조선어시간은 65시간이였다. 조선어강습에서 기본은 일본인경찰관들이 조선어의 기초라고 할수 있는 조선글조성법과 얼마간의 경찰용어습득이였으며 일본인순 사들은 조선글을 읽을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취급하였다.

각 도의 순사교습소는 도경찰부에 설치되였으며 여기서는 경찰기관에 처음으로 들어 온 조선인순사들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3~4개월정도의 경찰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내 용은 훈육, 법학대의, 경찰법, 형법, 위생대의, 소방, 어학, 경찰실무, 조련, 무도 등이였다.

일제는 1920년대에 다음으로 경찰기관에 필요한 물질적수단을 증강배치하였다.

이 시기 일제의 경찰기관에 필요한 물질적수단의 증강은 우선 경찰비지출을 전례없이 늘이는데서 나타났다.

무단통치초기인 1911년의 경찰비는 403만 8 000원, 총독부예산의 8%정도로서 무단통치전기간 경찰비의 규모와 그것이 총독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문화통치로 넘어가면서 경찰비를 대폭 증강하여 1920년의 경찰비는 1 670만 2 000원으로서 그것이 총독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15%, 1921년의 경찰비는 2 275만 4 000원으로서 그것이 총독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14%로 늘어났다.

이것은 경찰기관과 인원의 대폭적인 증강에 따른것이였다고 볼수 있으며 결국 이 시기 일제의 경찰비는 무단통치시기에 비해 액수에서는 4~5배, 그것이 총독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근 2배로 늘어났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찰비의 대대적인 증가에 대하여 일제총독부가 작성한 《내선문제에 대한 조선인의 목소리》라는 자료에서도 《조선사람들이 일본의 통치를 싫어하고있다. …이러한 사실을 더욱 담보하는것은 총독정치에서 그 (경찰의) 예산이다. 총독정치에서 최고의 경영비는 무엇인가. 그것은 조선에서의 식산(경제)비가 아니며 교육비가 아니며 실로 경찰비가 아닌가. 년간에 1천수백만원의 비용을 소비…》하고있다고 인정하였다.

이 시기 일제의 경찰기관에 필요한 물질적수단의 증강은 또한 경찰용무장장비를 강화한데서 나타났다.

일제는 경찰제도개편후 경찰폭압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한고리로서 경찰용무기를 대폭 증강배치하였다. 일제가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개편할 당시 경찰용무기는 보총 5 657정, 권총 1 272정이였는데 1922년 10월 31일에 이르러서는 보총 1만 3 894정, 권총 4 563정으로서 2.6배이상 늘어났다.

일제는 경찰용무기를 량적으로 증강하였을뿐아니라 그 질적측면도 개선하였다. 종전에 일제의 경찰용무기는 보총인 경우 구식인 22년식무라다련발기병총이 기본이였는데 이것을 페기시키고 30년식보총과 44년식보총, 38년식보총을 새로 경찰관들에게 무장시키였다. 일제는 보총과 권총의 대량적인 증강배치와 함께 경기관총을 매개 경찰서에 3~4정, 매 경찰관주재소에 1정씩 배당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이 시기 조선에서 저들의 침략군과 같은 급수와 성능의 무기로 경찰을 장비시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시 일제는 조선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더욱 신속하고 기동성있게 감시, 탄압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경비전화선망도 더욱 확장하였는데 무단통치시기였던 1919년 7월에 일제의 경찰경비전화선이 6 588km였다면 문화통치로 넘어간 이후인 1923년 8월에는 3만 176km로서 4.5배이상으로 늘어났다.

또한 1923년 8월현재 해안경비선 8척과 발동선 22척을 21개소의 해안경비초소에 배치하고 해상경찰에 의한 탄압조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이와 같이 경찰기구와 인원, 물질적수단을 확장하면서도 《물론 이것은 …경비상으로 생각할 때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할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이 시기 보통경찰제도를 어느 정도 강화하려고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의 하나이다.

1920년대 일제의 보통경찰제도의 강화는 문화통치의 기만성과 교활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 기만성과 교활성은 1920년대에 일제의 경찰폭압력량이 무단통치시기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증강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일제가 1920년대 문화통치로 이행하면서 새로 조작한 보통경찰기구는 그 기관수와 인원, 경찰비의 규모, 물적수단에서 모두 무단통치시기를 릉가하는 방대한 식민지폭압력 량이였다.

일제가 문화통치시기 경기도 3부장으로 임명되였던 지바 사도루도 자기가 쓴 《조선 독립운동비화》라는 책에서 《새 총독이 …문명정치를 표방하나 …불령(원한이나 불평불만 을 품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것)계획에 대한 탄압방침에는 의연히 변한것이 없다.》,《사이또총독이 임명되여 정치를 시작하자 문명정치는 문약정치로 되였다고 랭관시하면서 보통경찰제는 백면서생(한갖 글이나 읽을줄 알았지 세상일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 등 탁상공론으로 되였다고 웃음을 지으며 새로운 통치정책의 실패를 예견하였던 사람들도 점차 무단시기의 군대와 헌병이상의 위력을 새로운 경찰력에서 찾아보고 잘못되였다고 생각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문화통치시기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기관과 인원, 물질적수단을 대폭 증강하였다.

## 3. 결 론

문화통치시기 헌병경찰제도가 폐지되고 보통경찰제도가 설치됨으로써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폭압력량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기구체계의 면에서 무단통치시기와 달리 경찰기구가 총독부를 비롯한 행정기구의 한 개 부서로 됨으로써 반일독립운동을 비롯하여 조선인민의 일거일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통제하는데서 일치성을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문화통치시기 헌병경찰제도는 폐지되였지만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력량으로서의 헌병 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헌병과 경찰사이의 협력관계도 계속 유지되였다.

각급 경찰기관이 평양과 경성 등 주요도시는 물론 인적이 드문 산간지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배치되었다. 무단통치시기에는 국경지역에는 주로 헌병기관들이, 기타 지역에는 경찰기관들이 배치되여있었다. 특히 문화통치시기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에 경찰기관이 매우 조밀하게 배치되였다. 이것은 국외에서 벌어지고있던 독립운동의 영향이 국내에로 미치는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문화통치시기 경찰의 폭압기능이 무단통치시기에 비하여 매우 세분화되였다.

그것은 경찰의 말단직무인 순사의 폭압기능을 구체화한데서 알수 있다. 순사는 경찰의 제일말단직무로서 조선인민과 직접 대치되여있는 기본적인 폭압력량이였다. 일제는 순사를 내근, 외근순사로 가르고 외근순사의 폭압기능을 세분화하여 조선인민의 사소한 반일적인 요소도 제때에 감시탄압할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통치시기 경찰기능이 세분화된것은 각급 경찰기관들에 사상범죄를 취급하는 부 서를 새로 설치한데서도 잘 알수 있다.

문화통치시기 일제경찰이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에서 의거하는 각종 악법들이 적용대상과 형벌량에서 무단통치시기에 비하여 대폭 강화되였다. 일제는 문화통치시기 새로 조작한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과 《치안유지법》 등에서 조선인민의 반일독립운동을 첫째가는 탄압대상으로 규제하였다. 더우기 형벌량에서 극형까지 규제한것은 무단통치시기 찾아볼수 없던것이였다.

문화통치시기 경찰폭압력량에서의 변화는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26년 순종의 사망을 계기로 6.10만세시위투쟁이 폭발하였지만 일제경찰의 철저하고도 원천적인 탄압에 의해 3.1인민봉기와 같이 전국적규모에서 벌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6.10만세시위투쟁은 격렬성의 면에서도 3.1인민봉기처럼 벌어지지 못하였다. 일제경찰은 1926년초 순종의 병상태가 악화되자 그의 사망을 미리 예견하고 조선에서 3.1인민봉기와 같은 대중적인 반일독립운동이 일어나지 못하게 사전탄압조치를 면밀히 취해놓고있었다. 결과 6.10만세시위투쟁은 경성과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크게 번져지지 못하고 좌절되고말았다. 1925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일어난 조선공산당사건도 문화통치시기 일제경찰의 탄압책동의 악랄성을 보여주고있다.

력사적사실과 자료들은 오늘 일본반동들이 문화통치시기에 조선인민의 처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저들의 식민지통치가 조선의 문명개화에 기여라도 한것처럼 떠드는것이 한갖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결국 일제가 3.1인민봉기후 문화통치를 표방하였지만 경찰폭압통치라는 점에서는 본 질상 달라진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경찰폭압력량을 대대적으로 강화한 일제는 《힘은 경찰의 전부이다》라는 폭압구호를 공공연히 내걸고 조선인민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무단통치시기보다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는 문화통치의 간판밑에 보다 강화된 경찰폭압력량과 악법들에 의거하여 조선인 민에 대한 폭압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이것은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허울바꿈을 한 일제의 총독통치의 진면모였다.

실마리어 문화통치, 헌병경찰기구, 경무국